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-914호

## 대림비치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6-1번지 외 2필지 대림비치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,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,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계획 관계 서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7월 8일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

### 1. 공람기간 및 장소

가. 공람기간: 2026. 7. 8. ~ 2026. 7. 22. (14일간)

나. 공람장소

1) 해운대구청 건축과 (☎ 051-749-4611)

주 소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, 5층

2) 대림비치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(☎ 051-744-7697)

주 소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5, 관리사무실(중동)

다. 공람도서: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도서 등 관계 서류(공람장소에 비치)

### 2. 사업의 내용

가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1) 성 명: 대림비치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임채문)

2) 주 소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5, 관리사무실(중동)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대림비치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

- 다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6-1번지 외 2필지(1,866㎡)
- 라. 사업의 규모: 지하6층~지상48층, 1개동, 공동주택(135세대), 업무시설(45호), 근린생활시설
- 마. 사업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이내

### 3. 의견제출 대상 및 제출 방법

- 가. 대 상 자: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,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
- 나. 방 법: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(서면통지문에 동봉 또는 공람장소 비치) 작성 제출
- 다. 제 출 처: 해운대구청 건축과(전자문서 제출시: ljb3265@korea.kr)

대림비치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 
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의견서

|           |    |  |  |     |  |
|-----------|----|--|--|-----|--|
| 의견<br>제출자 | 성명 |  |  | 연락처 |  |
|           | 주소 |  |  |     |  |

☐ 제출의견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 
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공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26. . .

의견 제출자 :

(서명 또는 인)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